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67호 2011. 12. 26.(월)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-55호(도로명주소 고시) 1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-56호(도로명주소 고시) 3
-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-57호(도로명주소 고시) 5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-964호(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7

회							
람						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26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6 외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 12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-8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6	미부여	2011-12-19	송도국제대로 시작점에서 약 3720m지점의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-45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26	미부여	2011-12-19	송도국제대로 시작점에서 약 3720m지점의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3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-20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372번길 21	미부여	2011-12-19	송도국제대로 시작점에서 약 3720m지점의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26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825-26 외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 ~ 79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 12. 26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

NO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25-26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825-26	신축	2009-07-06	도로에 접하고 있는 아암도의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4-2 (101동)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18-13	신축	2009-07-09	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3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4-2 (102동)	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18-9	신축	2009-07-09	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26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6 외 1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 열 랐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810-7986~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

NO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폐지사유
1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6	2011-12-26	건축물 멸실
2	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114번길 6	2011-12-26	건축물 멸실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-964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1년 12월 23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2012. 1. 1일자 송도동 행정운영동 분동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 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송도동 행정운영동 분동에 따라 송도동 소재지를 송도1동 소재지로 개정하고 송도2동 소재지를 신설하여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. 1. 12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(동춘동 923-5번지)

○ 연 락 처 : 전화 810-7103, FAX 810-7109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
라. 제출서식

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붙임 1) 개정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송도동란을 송도1동란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, 송도1동란 다음에 송도2동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(제2조 관련)

구 분	소 재 지
송도1동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35번길 8
송도2동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

붙임 2)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

현 행		개 정 (안)	
[별표]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		[별표]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	
송도동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35번길 8	송도1동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35번길 8
		송도2동	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